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823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6. 8. 10.

판결 선고 2016. 8. 31.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517563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공동피고 A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4. 체결된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7. 접수 제8003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기위하여 2013. 4. 3. 원고와 보증금액을 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4.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2014. 12. 4.경 위 A가 원금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21. 농협은행에 A의 위 대출원리금 34,575,458원(= 원금 34,120,000원+ 이자 455,4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499,1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액은 34,076,278원이 되었다.

다. 한편 위 A는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앞으로 2014. 10. 14. 재산분할(서울가정법원 2014년18557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함, 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보증인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농협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34,575,458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A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농협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민법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일인 2014. 10. 14.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 A가 원고 또는 농협은행에 대하여 34,575,458원 상당의 대출금(또는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2008. 7. 8.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 1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0. 10. 11.경 위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실, 피고가 2014. 11. 21. 현재 주소지로 이사할 때까지는 A 또는 피고가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체결 당시인 2014. 10. 14. 무렵 이 사건 부동산지분 외에도 위 1억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달리 A가 그 이전에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반증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A 명의의 1억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에 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을 당사자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그 일방의 소유였던 고유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 또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든증거들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A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이정엽, 판사 허정룡

목록

1. 서울 동대문구 C 대 162㎡
2. 위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2층 주택
 - 1층 80.34㎡
 - 2층 78.84㎡
 - 지층 80.98㎡, 끝.